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임상영양사 의무배치〉

■ 전현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668호)

2025.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개정안의 내용	2
2. 검토의견	2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6

I.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전현희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7. 23.

(3) 회 부 일 : 2025. 7. 2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관리를 위하여 영양판정, 영양상담, 영양소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에게 영양사 면허 외에 임상영양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이와 같이 일반적인 영양사 외에 임상영양사 제도가 국가 자격으로 법제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은 입원실을 갖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에 1명 이상의 영양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영양관리 분야에서 보다 전문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상영양사의 배치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영양관리 분야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에 임상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임상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41조의3(임상영양사) ①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환자의 영양 관리를 위하여 임상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배치기준은 의료기관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2. 검토의견

- 임상영양사란 건강관리를 위하여 영양판정, 영양상담, 영양소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로, 2010년 「국민영양관리법」 제정 시 국가 자격 제도가 도입되었음.

임상영양사가 되기 위해서는 영양사 자격 취득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¹⁾에서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이후 보건소, 의료기관, 집단 급식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²⁾에서 1년 이상 영양사로서의 실무경력을 쌓은 뒤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함.³⁾

□ 임상영양사는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질병별로 전문화된 영양 판정, 영양상담, 영양모니터링 및 영양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1) 2025년 현재 총 53개의 교육기관이 지정되어 있음(참고자료1)

2) **[보건복지부고시]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실무경력 인정기준**

제2조(실무경력 인정범위)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라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6. 「국민건강보험법」제 14조제1항4호 등에 따라 국민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센터
7.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근로자건강센터
8.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영양 개선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양 상담·교육 등 영양관리를 시행하는 기관 등

3)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임상영양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관리를 위하여 영양판정, 영양상담, 영양소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에게 영양사 면허 외에 임상영양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업무, 자격기준,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임상영양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와 보건소·보건지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1년 이상 영양사로서의 실무경력을 충족한 사람
2.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24조(임상영양사의 교육과정) ① 임상영양사의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그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② 임상영양사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영양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한다.

<영양사 및 임상영양사의 업무>

영양사의 업무 (국민영양관리법 제17조)	임상영양사의 업무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1. 건강증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및 상담 2. 식품영양정보의 제공 3. 식단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4.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5.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6.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7.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질병별로 전문화된 다음 각 호의 업무 1. 영양문제 수집·분석 및 영양요구량 산정 등의 영양판정 2. 영양상담 및 교육 3. 영양관리상태 점검을 위한 영양모니터링 및 평가 4. 영양불량상태 개선을 위한 영양관리 5. 임상영양 자문 및 연구 6. 그 밖에 임상영양과 관련된 업무

□ 개정안은 이처럼 일반적인 영양사 외에 영양관리 분야에서 보다 전문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상영양사 제도가 국가 자격으로 법제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상 임상영양사의 배치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문적인 영양관리 및 교육·상담이 필요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영양사가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없다고 보아,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임상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하려는 것임.

- 참고로,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에는 1명 이상의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있음.⁴⁾

4)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신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1명 이상의 영양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임상영양사를 두도록 의무화할 경우 일선 병원에서는 기존의 영양사를 임상영양사로 대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는 현재 근무중인 영양사와 이를 대체하는 임상영양사 간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또한 시행규칙으로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다른 보건의료인력과 달리 임상영양사의 배치기준에 대해서만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 및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참고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보건의료인의 적정 배치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들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⁵⁾

□ 둘째, 현재 임상영양사 자격증 소지자는 2023년 기준 4,803명⁶⁾ (2025년 기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누적합격인원 5,034명⁷⁾)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① 법 제36조제5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② 의료기관은 제1항의 의료인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두어야 한다.

1.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별표 5의2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약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두어야 한다.
2.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에는 1명 이상의 영양사를 둔다.
3.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수의 의료기사를 둔다.
4. 종합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둔다.
5.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간호조무사를 둔다.
6.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환자의 갱생·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명 이상 둔다.
7. 요양병원에는 시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 둔다.

- 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211092, 김윤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211993,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6) 보건복지부, 2024 보건복지통계연보

7) 한국영양교육평가원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통계(참고자료2)

2025년 5월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수가 4,245개소⁸⁾임을 고려할 때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 (신중 검토)

- 임상영양사 배치로 환자의 전문적 영양 관리, 교육·상담 등을 지원
해야 하는 필요성 등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병원급 의료기관에
‘임상영양사 배치’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① 전문간호사 등 타
직종과의 형평성, ② 병원급 의료기관 대비 임상영양사 배출 규모,
③ 영양사와의 역할 등 실태 파악, ④ 영양사 외 임상영양사 채용에
따른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2) 공정거래위원회 (조건부 찬성)

-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우 임상영양사 고용 곤란으로 영업활동이 제한
되는 등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임상영양사 배치 의료기관의 종류
및 규모 등을 정할 때 의료기관의 현실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8)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3) 대한의사협회 (반대)

-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 영양사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며 “의료인 외” 인력과 비교하여 임상영양사만 법률로 정하는 것은 타 직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남.
- 임상영양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현재 의료기관 수 대비 임상영양사 인력이 부족하며 인력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의료현장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대한치과의사협회 (반대)

- 치과병원까지 임상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입법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고 치과병원 운영에 과도한 인력 및 행정부담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치과병원’은 제외할 필요가 있음.

5)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반대)

- 임상영양사 인력 수급, 수가 구조, 의료기관의 현실을 고려하면 임상영양사 배치의무화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배치 권장 및 인센티브 제공 형태의 유연한 제도 등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대한영양사협회·한국영양교육평가원 (찬성)

- 국가 자격으로 법제화되어 있는 영양관리 분야의 전문인력인 임상영양사를 병원급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본 개정안에 적극 찬성함.

7) 대한병원협회 (반대)

- 임상영양사 수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으며 재정 지원 없이 법적 의무만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의료현장 파악 및 재정 지원방안 마련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보건의료인력 기준의 경우 부령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임상영양사 배치기준만 별도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다른 인력 기준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음.

8) 대한요양병원협회 (반대)

- 임상영양사 배치 의무를 추가할 경우, 장기간 환자식이 및 영양관리를 담당해 온 현장 인력들이 배제되거나 보조적 역할로 전락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며, 병원급 의료기관 대비 임상영양사 자격소지자 수는 제한적으로 특히 지방의 경우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임상영양사 의무배치보다 기존 영양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며, 관련 수가의 신설·인상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임상영양사 채용을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9)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찬성)

- ☐ 영양관리 분야에서 전문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상영양사 배치
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은 환자의 건강권 보호 및 치료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임.

문 의 처
02)6788-5494

참고1**임상영양사 교육기관 목록**

연번	기관명	교육생정원	교육개시연도
1	가천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	10	2012
2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5	2012
3	강릉원주대학교 일반대학원	5	2012
4	경남대학교 대학원	5	2013
5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3	2024
6	경상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5	2013
7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10	2012
8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4	2012
9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5	2013
10	고신대 보건대학원(2016까지 운영)	5	2013
11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5	2019
12	군산대학교 일반대학원	5	2021
13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5	2013
14	대구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3	2012
15	대구대학교 대학원	3	2013
16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5	2012
17	대진대학교 일반대학원	5	2012
18	덕성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3	2013
19	동덕여자대학교 미래전략융합대학원	5	2012
20	동아대학교 일반대학원	5	2012
21	동의대학교 대학원	3	2013
22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5	2012
23	부경대학교 산업대학원	5	2012
24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5	2012
25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5	2022
26	서울대학교 대학원	5	2012
27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5	2012
28	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	5	2021
29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8	2012
30	수원대학교 일반대학원	5	2015
31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5	2012
32	순천향대학교 건강과학대학원	10	2012
33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3	2015
34	신한대학교 대학원(2018.2까지 운영)	5	2012

연번	기관명	교육생정원	교육개시연도
35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11	2012
36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3	2022
37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5	2013
38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10	2012
39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3	2012
40	을지대학교 일반대학원	2	2016
41	이화여대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10	2012
42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7	2012
43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5	2012
44	전남대학교 대학원	5	2012
45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5	2012
46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4	2013
47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5	2013
48	창원대학교 보건대학원	5	2012
49	충남대학교 대학원	7	2012
50	충북대학교 대학원	5	2012
51	한남대학교 대학원(2018.4까지 운영)	5	2013
52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10	2012
53	호서대학교 일반대학원	5	2013

참고2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통계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통계

2025. 5. 16.

년도	횟수	시험시행일	합격자발표일	접수인원 (명)		응시인원 (명)	합격인원 (명)	합격률 (%)	누적합격 인원 (명)	누적합격 률 (%)
2012	1	2012. 4. 29	2012. 5. 25	3,620		3,571	3,459	96.9	3,459	96.9
2013	2	2013. 4. 28	2013. 5. 15	659		631	394	62.4	3,853	91.7
2014	3	2014. 4. 20	2014. 5. 9	148		123	27	22.0	3,880	89.7
2015	4	2015. 6. 14	2015. 6. 25	131	전체	118	87	73.7	3,967	89.3
					교육기관 ¹⁾	84	74	88.1		
					특례자 ²⁾	34	13	38.2		
2016	5	2016. 4. 17	2016. 5. 3	147	전체	145	93	64.1	4,060	88.5
					교육기관 ¹⁾	119	89	74.8		
					특례자 ²⁾	26	4	15.4		
2017	6	2017. 4. 23	2017. 5. 4	167	전체	165	94	57.0	4,154	87.4
					교육기관 ¹⁾	146	93	63.7		
					특례자 ²⁾	19	1	5.3		
2018	7	2018. 4. 22	2018. 5. 11	155	전체	152	125	82.2	4,279	87.2
					교육기관 ¹⁾	144	124	86.1		
					특례자 ²⁾	8	1	12.5		
2019	8	2019. 4. 21	2019. 5. 10	154	전체	152	118	77.6	4,397	86.9
					교육기관 ¹⁾	142	116	81.7		
					특례자 ²⁾	10	2	20.0		
2020	9	2020. 7. 12	2020. 7. 31	138	전체	136	116	85.3	4,513	86.9
					교육기관 ¹⁾	131	115	87.8		
					특례자 ²⁾	5	1	20.0		
2021	10	2021. 4. 25	2021. 5. 14	129	전체	129	99	76.7	4,612	86.7
					교육기관 ¹⁾	121	95	78.5		
					특례자 ²⁾	8	4	50.0		
2022	11	2022. 4. 24	2022. 5. 13	135	전체	132	90	68.2	4,702	86.2
					교육기관 ¹⁾	128	90	70.3		
					특례자 ²⁾	4	0	0.0		
2023	12	202. 4. 23	2023. 5. 12	145	전체	144	108	75.0	4,810	85.9
					교육기관 ¹⁾	140	108	77.1		
					특례자 ²⁾	4	0	0.0		
2024	13	2024. 4. 28	2024. 5. 17	162	전체	160	132	82.5	4,942	85.8
					교육기관 ¹⁾	157	131	83.4		
					특례자 ²⁾	3	1	33.3		
2025	14	2025. 4. 27	2025. 5. 16	145	전체	141	92	65.2	5,034	85.3
					교육기관 ¹⁾	138	91	65.9		
					특례자 ²⁾	3	1	33.3		

¹⁾교육기관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2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임상영양사 교육기관(대학) 졸업 수트자

²⁾특례자 : 2012.3.27. 이전 실시된 민간임상영양사 자격증(대한영양사협회발행) 소지하고 그 자격을 유지한 자

자료: 한국영양교육평가원